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9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 개최일시 : 2015. 12. 7(월) 10:20 ~ 18:10

□ 개최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참석인원

- 위 원 : 6명(차준택, 유일용, 허준, 이영훈, 신영은, 이용범)
- 공무원 : 이용철 기획관리실장, 박명성 재정기획관,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 유병윤 행정관리국장, 천준호 정책기획관, 정중석 감사관

□ 주요내용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참석위원 : 6명 (차준택, 유일용, 허준, 신영은, 이영훈, 이용범)
- 참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 수정내용

- 제23조 8항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를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로 수정함.

□ 질의 및 답변

< 이영훈 위원 >

- 현재 휴가 운영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 사용한 휴가일수 제외는 중구청만 해당 되는 것인지?
→ 맞습니다
- 휴가일수가 조금 과하지 않나 싶다.

< 허준 위원 >

- 장기제직 휴가를 실시함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은 되어 있는지?
→ 업무대체 방안에 대해서는 사전 휴가계획에 의거 업무대체자 지정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유일용 위원 >

- 공무원중 입영 동행휴가 대상자가 형제, 자매에 해당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본다.

2.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참석위원 : 6명 (차준택, 유일용, 허준, 신영은, 이영훈, 이용범)
- 참석공무원 : 재난안전본부장, 재난대응복구과장

□ 질의 및 답변

< 이영훈 위원 >

-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기준은? 기준이 모호하다.
→ 해수욕장 인명구조 등 장비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공공용도에 대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임.

< 유일용 위원 >

- 공공분야(용도)가 사익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 공공분야와 사익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하고 공공분야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

3.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 6.25 전쟁납북 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참석위원 : 5명(차준택, 유일용, 허준, 이영훈, 신영은)

[수정동의안]

- 제62조 제명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조례”를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조례”로 하여

□ 집행부(기획조정실장) 의견 : 별다른 의견 없음.

□ 주요 질의내용

< 유일용 의원 >

-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로 띄어쓰기를 해야 할 것임.
→ 조직, 단체를 지칭하는 명칭은 붙여 써야 하나 단어가 길 때에는 띄어쓰는 경우도 있음.

< 이영훈 의원 >

- 동 조례안이 개정되면 별도로 조례가 되나?
→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사항으로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행정조치로 이해할 수 있음.

4. 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 수정가결

※ 참석위원 : 5명(차준택, 유일용, 허준, 이영훈, 신영은)

[수정동의안]

- 제명 '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을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으로 하고
- 제1조
'인천광역시(이하 "시" 이라 한다.)의' 를 '인천광역시'로 하고
- 제2조 '위원회'를 "각종 위원회"로 하고
'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로 하고
- 제3조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를 ' 각종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문 및 시 내부적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로 하고
- 제4조 '각 위원회는' 을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위원회는'
으로 하고
- 제5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로 하고
- 제6조
'토론'을 '질의 및 토론'으로 하고
- 제7조 제1항의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열람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위원 2명에게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하여야
하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 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되

"녹음파일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녹음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하여

□ 집행부(기획조정실장) 의견 :

- 시 내부 위원회가 162개임. 단순 자문위원회 성격은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중요도상 3급 이상 3명이 참석한 회의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경우는 공개에 예외로 한다고 해서 법률간 상충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열람은 모두 적용하되 서명은 의원
중 2명이 윤번제로 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주요 질의내용

< 허 준 의원 >

- 시 내부 위원회 162개 중 의결기능의 위원회는 139개임.
- 회의록을 전면 공개할 필요가 있는 반면, 자유토론 등 소신발언을
위해 비공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인가?
→ 공개에서 예외해야 할 것들은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신영은 의원 >

- 위원회 회의결과 어떤 사안에 대하여 반대했는데 찬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없었나? 공공기관 통폐합 진행시 인천상공회의소가 찬성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실제 확인한 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제정
투융자심사회의의 사항도 그러함.
→ 기관통폐합 관련 회의는 법령에 기재된 사항도 아니었고, 투융자심사
위원회에서도 다수의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의원이 아닌 통합적
인 의견을 발표함에 따라 그렇게 보였던 것임.

< 이영훈 의원 >

- 어떤 위원회서든 약식으로라도 회의개최 결과 보고를 작성해야 함.
- 회의록이나 녹음기록을 작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개하는게 관건임.
이미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것임.
- 해당 위원들 모두에게 차후에 서명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의회 회의록 서명처럼 윤번제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유일용 의원 >

- 시의 내부적 상황 - 예) 인사발령 같은 사항은 공개에서 제외되어야 함.
- 제6조 회의록 공개에서는 토론 뿐만 아니라 질의내용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5.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참석위원 : 4명(차준택, 유일용, 이영훈, 신영은)

[보류동의안]

- 제반 조례 개정에서 종합적인 의견 수렴 및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보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의원 요구자료 : 없음

□ 주요 질의내용

< 유일용 의원 >

- 정관에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되는 것은 법률순서에 맞지 않음. 조례는 인천시민의 합의적 성격이고, 정관은 이사회 합의적 성격임. 조례에 따라 정관이 구속되는 것임
-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정관에 규정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편성할 필요가 없음.

< 이영훈 의원 >

- 시설물 훼손이나 인명피해가 날 수 있음. 본인 과실이 아니어도 관공서 과실일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음.
- 관련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므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은 아님.

< 이용범 의원 >

-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조례에서 기금의 용도를 삭제하였음. 재해구호법에서 용도를 별도로 명시하여서 조례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해당 사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어 적절하지 않음.

< 차준택 의원 >

- 조례 내용이 일괄개정 취지에 맞게 단순하지 않고, 정관에 있어서 조례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음. 정관에 있어도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에 표기해야 하는 것이 맞음.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도 마찬가지로 조례상 명확히 표기해 놓을 필요가 있음.
- 상위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중복규정으로 보아 불필요하다고 봄

6.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참석위원 : 5명(차준택, 유일용, 이영훈, 신영은, 허 준)

□ 주요 질의내용

< 신영은 의원 >

- 인천발전연구원의 출연 지원에 관하여 이미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자 조례를 재정할 필요가 있나?
- 타 시도에서도 조례로 재차 규정하고 있음

< 차준택 의원 >

- 재해구호기금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한다는 반면 인천발전연구원은 법령에 있어도 조례에 게재하려는 것은 서로 같음 상황임에도 모순되는 경우임.

7.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참석위원 : 4명(차준택, 유일용, 신영은, 허 준)

[수정동의안]

- 제4조 제3항의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재위탁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를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고

○ 제12조 제1항의 ‘수탁기관에’를

“수탁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의신청 사항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 제12조 제2항의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를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로 하여

□ 주요 결의내용

< 이영훈 의원 >

○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재위탁을 결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간 만료되면 재공모를 해야 하는 것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위탁공고를 하기 전에 위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한번 승인해 주는 것을 계속 재위탁한다고 허용하는 것은 무리임. 만일 파행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있다면 이를 중단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는 것일 수 있음. 일방통행적인 사항임.

→ 서울이나 충북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고 있음. 사전보고 방식은?

→ 별개의 의안으로 앉히고 서면으로 보고하려고 함

< 허 준 의원 >

○ 집행부에서 보고하였을 때 위원회에서 거부해도 현재와 같지 강력히 저지할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 의회에서 반대해도 집행부에서 추진할 우려가 있음

< 유일용 의원 >

○ 현행 조례안은 수탁자와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었던 반면 개정조례안은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수탁자를 보호하는데 치중하고 있음. 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자는 민원인일 수도 있고, 경쟁상대자일 수도 있음. 현행법이 훨씬 잘 되어 있음.

→ 권한을 수탁기관에 부여했다면 책임도 일임해야 한다고 봄. 시장이 행정

심판에 참여함. 시와 군구와의 이의신청에서도 각각 책임을 지고 있음.

○ 집행부가 수탁업무를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과 같음. 문제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라는 뜻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이 배제되었음.

→ 시의 업무부담을 줄이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것임.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이 결정하는 것임.

8.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참석위원 : 4명(차준택, 유일용, 신영은, 허 준)

□ 주요 결의내용

< 허 준 의원 >

○ 경제청하고 자치구와의 입장차이는?

→ 현재 인력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략 합의되었고, 12월말까지는 합의가 완료될 예정임. 예산에서도 다소 이견이 있음.

< 신영은 의원 >

○ 인력이 곧 예산이 아닌가?

→ 예산은 사무관리에 대한 것이고, 현재 경제청 인력이 군구로 이체될 예정임. 2016~2017년에는 소요인력의 50%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9.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원안가결

※ 참석위원 : 4명(차준택, 유일용, 신영은, 허 준)

□ 주요 결의내용

< 허 준 의원 >

○ 피해 현황을 보면 구조된 19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

→ 해당되지 않음. 사망자들만 해당하는 것임.

10.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참석위원 : 4명(차준택, 유일용, 신영은, 허 준)

□ 주요 질의내용

< 허 준 의원 >

- 1일 미만이 도축장이 얼마나 있나? 실제로는 닭만 적용되는 것인가?
→ 1군데만 있음. 실제 하고 있는 것은 소, 돼지, 닭만 하고 있음.
-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은?
→ 검사관은 5,200만원이고 검사원은 3,200만원임. 검사관은 전액 국비이고, 검사원은 절반만 국비로 지원됨. 닭 수수료 수입을 비교하면 추가 비용은 없음.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참석위원 : 4명 (차준택, 유일용, 허준, 신영은)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비 고
12. 14(월) 14:00	10	1.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자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왕 동 향